

심사기준조회

개최일/시행일	2008- 09- 18	일련번호	01- 02	관련근거	보험급여과- 1995호
구분	행정해석	심사지침개최일			
제목	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회신(요양기관 인력기준)				
결정사항/복지부 행정해석 내용					
<p>○ 질의 :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,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요건중 가정간호사가 일시적으로 1인만 근무하여도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?</p> <p>○ 회신 :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(질병휴직 등) 결원(최소 1인)이 발생하여 1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근무하는 경우 결원발생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인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, 1인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결원된 경우라 할지라도 의료법령에서 정한 인력(2인 이상)은 해당 결원발생연도 1년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함</p>					
첨부파일 목록					
첨부파일 없음					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